

평창군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

(남진삼 의원)

의안 번호	188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: 2023년 10월 30일

발 의 자 남진삼 의원

찬 성 자 김성기, 이창열, 박춘희의원

1. 제안이유

평창군 예비군 대원들의 훈련장 이동을 위한 군부대의 차량 운행 시 필요한 운행 경비를 지원하여 평창군 예비군의 이동권을 확보하고자 관련 조례 제정을 제안함

2. 주요내용

가. 목적(안 제1조)

나. 정의(안 제2조)

다. 차량운행 비용의 지원 등(안 제3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예비군법」 제14조의3, 「예비군법 시행령」 제32조, 「예비군 육성·지원에 관한 규칙」 제4조

나. 예산조치: 붙임 참조(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)

다. 입법예고: 2023. 10. 4. ~ 2023. 10. 17. (14일간), 의견 없음.

라. 집행기관의견수렴: 2023. 9. 22. ~ 2023. 9. 27. (6일간), 아래표 참조.

조례안(의회안)	검토안(안전교통과)	사유	의회 의견
<p>평창군 예비군 훈련장 차량지원에 관한 조례(안)</p>	<p>- 예비군법 시행령 제32조 「예비군 훈련장 및 훈련시설의 유지지원」에 의거 제8087부대 만중예비군 과학화훈련장에 대한 차량임차료 및 훈련에 필요한 물품등을 지원하고 있음</p>	<p>- 예비군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현재 지원하고 있어, 평창군 예비군 훈련장 차량지원에 관한 조례(안)은 불필요하다고 판단됨. - 조례가 제정 된다면 만중훈련대 지원에 관한 부분만 다시 보조금 신청 및 정산을 해야하는 등 업무에 절차상 중복으로 인한 업무량 증가.</p>	<p>[미수용] 원안유지</p>

「붙임 1」 조례안

평창군 조례 제 호

평창군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(안)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평창군 예비군대원들의 예비군 훈련장 입소편의를 위하여 예비군 훈련 책임 부대장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예비군대원의 사기 진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훈련장”이란 제8087부대 만종예비군과학화훈련장을 말한다.
2. “예비군”이란 평창군에 거주하는 예비군으로서 훈련장으로 훈련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.
3. “차량”이란 예비군 수송을 위하여 군 관할구역 안에서 훈련장까지 운행하는 임차차량을 말한다.

제3조(차량운행 비용의 지원 등) ① 평창군수는 예비군 훈련 책임 군부대의 장으로부터 차량운행 비용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임차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방법, 절차 및 결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「예비군 육성·지원에 관한 규칙」 및 「평창군 보조금 관리 조례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「붙임 2」 관계법령

예비군법

[시행 2023. 6. 14.] [법률 제19082호, 2022. 12. 13., 일부개정]

제14조의3(예비군의 육성 및 지원 책임) 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직장예비군이 편성된 직장의 장은 그 관할구역 또는 그 직장의 예비군을 육성·지원하여야 한다.

② 예비군의 육성·지원을 위하여 각급 행정구역 및 직장 단위로 방위협의회를 설치·운영하여야 하고, 그 구체적 범위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③ 제5조제1항에 따라 군부대의 장이 예비군의 동원을 하는 때에는 경찰서장은 동원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.

[전문개정 2010. 1. 25.]

예비군법 시행령

[시행 2023. 6. 14.] [대통령령 제33500호, 2023. 6. 7., 일부개정]

제32조(예비군의 육성·지원) ① 법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예비군의 육성·지원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16. 11. 29.>

1. 예비군부대 사무실의 설치·운영 및 유지
2. 예비군부대의 운영을 위한 장비 및 물자의 지원
3. 예비군훈련장 및 훈련시설의 유지 지원
4. 지역방위작전과 관련된 급식·수송·통신·의료·장비·물자 및 전투시설 지원

5. 예비군대원에 대한 사기양양, 민·관·군 간의 유대 강화 및 홍보, 그 밖에 예비군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② 동원된 지역예비군에 대한 급식은 작전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하고, 직장예비군에 대한 급식은 해당 직장의 장이 지원한다.

예비군 육성·지원에 관한 규칙

[시행 2021. 10. 25.] [국방부령 제1068호, 2021. 10. 25., 타법개정]

제1장 총칙

제4조(예비군 육성·지원의 책임) 「예비군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예비군 육성 및 지원의 책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. <개정 2016. 11. 30.>

1. 국방부장관: 예비군 육성·지원 정책의 총괄과 예비군 육성·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의 시행
2. 각급 국가기관의 장: 예비군의 육성을 위한 상호 협조·지원과 산하의 기관·단체 및 기업체 직장예비군의 육성·지원
3. 지방자치단체의 장: 관할 지역 안 지역예비군의 육성·지원
4. 직장예비군이 편성된 직장의 장[「예비군법 시행령」(이하 “령”이라 한다) 제5조제6항에 따라 직장예비군을 통합하여 편성·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통합 직장예비군부대 안의 모든 직장의 장]: 소속 직장예비군의 육성·지원

[전문개정 2014. 1. 16.]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제3조(차량운행 비용의 지원 등) ① 평창군수는 예비군 훈련 책임 군부대의 장으로부터 차량운행 비용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임차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○ 「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5항제2호

3. 미첨부 사유

○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4. 작성자

작성자	평창군의회 남진삼 의원
연락처	(033) 330 - 2505

「평창군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(안)」 발의
찬성의원 서명(날인)부

○ 발의 : 남진삼 의원

구분	직 위	성 명	서명(날인)
1	평창군의회 의원	김성기	김성기
2	평창군의회 의원	이창열	이창열
3	평창군의회 의원	박춘희	박춘희